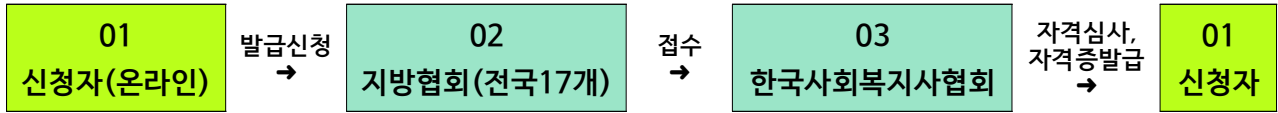


「사회복지사 자격증」 발급 신청 안내(종전법대상자)

<자격증 신청절차>



<구비서류>

구비서류	비 고
자격증발급신청서 (온라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lic.welfare.net 온라인 자격 신청 온라인으로 입력한 발급신청서를 저장, 출력하여 필요 증빙서류와 함께 가까운 시·도 사회복지사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- 신청서 작성시 최종학력, 교과목 이수여부 등은 구비서류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
졸업증명서 1부 (학과, 전공 무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받은 학위증명서 - 졸업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-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 받은 원본만 제출가능
성적증명서 1부 (총14과목)	<p><성적증명서 발급 절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신청(OT자료 참조) 후 성적증명서 발급 - 3분기 신청 기간: 본원 성적 보고 후(문자발송) ~ 2023년 7월 31일(월)까지 -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 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-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받은 성적증명서 (학점등록인정서는 불가) - 대학교 재학시 이수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 있을 경우 대학교의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-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.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자 제출서류 :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(원격 평생교육원 성적증명서 등)
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업 종료 후 원본 수령 - 실습지도자/실습기관/실습지도교수/교육기관 날인(서명)여부 확인 요망
증명사진 (3.5cm×4.5cm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- 이미지 파일로 온라인 신청서에 등록
신청비 7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격증 발급비 1만원, 회원증 발급비 1만원, 연회비 5만원 ● 해당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 입금하시면 됩니다.

- 발급 : 신청 후 10일 이상 소요

<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또는 시·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>

경북사회복지사협회	[38452]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386, 2층 TEL 053)814-8611 계좌번호 농협 301-0095-9138-11
대구사회복지사협회	[41155] 대구시 동구 동촌로 16길 20 동촌신협 6층 TEL 053)986-9881 계좌번호 대구은행 040-10-000737
경남사회복지사협회	[51352]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6호관4층 6408호 TEL 055)299-1518 계좌번호 경남은행 055-299-1518
한국사회복지사협회	02-786-0845

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(온라인 신청으로 변경됨)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	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	전자우편주소		
	직장명	우편물 수령 []자택 []직장 []직접수령		
	주소 (자택) (직장)			
신청구분	[]신규	[]승급	신청등급 []1급 []2급	
	구분	기간	학교명 전공명	
최종학력	[]박사 []석사 []학사 []전문학사	[. . .]부터 [. . .]까지		
사회복지 법정 교과목 이수여부	교과목이수학교	[] 대학원(석·박사) [] 대학	[] 전문대학 [√] 평가인정 학습과정 [] 기타()	
	필수 교과목	[]사회복지학개론	[]사회복지법제와 실천	[]사회복지실천기술론
		[]사회복지실천론	[]사회복지정책론	[]사회복지조사론
		[]사회복지행정론	[]사회복지현장실습	[]인간행동과 사회환경
		[]지역사회복지론		
	선택 교과목	[]가족복지론	[]가족상담 및 가족치료	[]교정복지론
		[]국제사회복지론	[]노인복지론	[]복지국가론
		[]빈곤론	[]사례관리론	[]사회문제론
		[]사회보장론	[]사회복지역사	[]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
		[]사회복지와 인권	[]사회복지윤리와 철학	[]사회복지자료분석론
[]사회복지지도감독론		[]산업복지론	[]아동복지론	
[]여성복지론		[]의료사회복지론	[]자원봉사론	
[]장애인복지론		[]정신건강론	[]정신건강사회복지론	
[]청소년복지론	[]프로그램 개발과 평가	[]학교사회복지론		
사회복지현장 실습	기간 [. . .]부터 [. . .]까지	실습기관	기관실습 지도자 실습세미나 교수	

1. 본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. (확인 [])

<결격사유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
3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4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
5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
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